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92. 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制定理由

-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91. 12. 31)됨에 따라
- 우리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主要骨子

가. 機 能

사하구 재정계획수립시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

나. 構 成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함
- 위원은 의회의원, 국장, 실·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분야 전문인사

다. 會議開催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및 필요시 개최

3. 關係法令 : 別 添

부산직할시 사하구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사하구 재정 계획 수립에 따른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 국, 실·과장 및 지방 재정 관련 분야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 7 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關係法令(地方財政法)

제16조(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